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096

발의연월일: 2022. 11. 4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유정주 · 오영환

한병도 • 신동근 • 장철민

이상헌 • 고용진 • 김윤덕

이성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.

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·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.

또한 복제·배포·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 ·배포·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음.

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·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, 복제·배포·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 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및 제33조의2).

법률 제 호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중 "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을 "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로, "어문저작물"을 "어문저작물, 연극저작물 및 영상저작물"로 한다. 제33조의2제2항 중 "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"을 "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	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				
제 등) ① (생 략)	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	
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	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				
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	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	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	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				
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	<u>으로 정하는 시설</u>				
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					
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					
기 위하여 공표된 <u>어문저작물</u>	어문저작물 <u>,</u>				
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	연극저작물 및 영상저작물				
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					
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·배포					
또는 전송할 수 있다.		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		
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	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				
복제 등) ① (생 략)	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	
② <u>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</u>	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				
<u>을</u>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	<u>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</u>	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					
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					
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					
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					
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					

丑;	된 저	작물등	·에 포	함된] 음/	성
및	음향	등을	자막	등	청각기	ડ}- ၀
애	인이	인지할	수 있	l는	방식	<u>ò</u>
로	변환	할 수	있고,	이란] 한 기	\
막	등을	청각정	상애인	등이		<u>영</u> .
할	수	있도록	복제	• 배	王•号	공
연	또는	공중송	당신할	수	있다.	
3	(생	략)				

③ (현행과 같음)